

2025년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장기요양서비스 월 한도액

(단위 : 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월 한도액(100%)	2,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177,000	657,400
월 한도액(120%)	2,767,680	2,500,080	1,782,840	1,644,720	1,412,400	

2. 이용료 및 월 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 금액은 1일을 기준으로 계산하고자 하는 횟수를 곱한 후 절사한다.(※ 주의 : 본인부담금기준 계산하고자 하는 횟수를 곱하면 안 됨)

1) 방문요양

(단위 : 원)

시간	이용료		월(20회) 본인부담금	월(20회) 본인부담금	월(20회) 본인부담금
	1회 기준	월 20회 기준	15%	9%	6%
30분	16,940	338,800	50,820	30,492	20,320
60분	24,580	491,600	73,740	44,240	29,490
90분	33,120	662,400	99,360	59,610	39,740
120분	42,160	843,200	126,480	75,880	50,590
150분	49,160	983,200	147,480	88,480	58,990
180분	55,350	1,107,000	166,050	99,630	66,420
210분	61,670	1,233,400	185,010	111,000	74,000
240분	68,030	1,360,600	204,090	122,450	81,630

2) 방문목욕

(단위 : 원)

분류	이용료		월(4회)본인부담금		
	1회기준	월4회기준	15%	9%	6%
차량이용(차량내)	86,480	345,920	51,880	31,130	20,750
차량이용(가정내)	77,970	311,880	46,780	28,060	18,710
차량 미이용	48,690	194,760	29,210	17,520	11,680

※ 월한도액 초과하여 서비스 이용시 이용자 100% 자부담 원칙

3. 심야 가산 :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할 수 있다.

4.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50%를 가산할 수 있다.